

『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』 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『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』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『적립식 예금 약관』 및 『예금거래 기본 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예금의 종류

이 예금의 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.

제 3 조 가입대상

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에 한합니다.

1.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장병

2. 가입대상임을 증명하는 『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』 원본을 제출한 장병

(단, 비대면 신규시 자격검증서비스^(주1)로 검증된 『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』를 제출한 장병)

^(주1) 자격검증서비스 :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금융분산ID (결제원과 각 은행이 기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, 디지털증명서를 발급·검증·관리하는 시스템)를 통해 '자격검증 정보', '자격검증확인' 등을 거치는 일체의 서비스

② 이 예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, 양도가 불가합니다.

③ 이 예금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 (단,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이 불가합니다)

제 4 조 계약기간

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~24개월 이내 일단위로 합니다.

② 이 예금의 만기일은 전역(또는 소집해제) 예정일로 합니다. (단,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)

③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.

제 5 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20만원 이하입니다. (0원 신규 가능)

제 6 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

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0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적립이 가능합니다.

단, 『장병내일준비적금』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이며,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2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.

제 7 조 이자지급

① 이 예금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

② 이 예금의 만기일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항의 기본금리에 제 8 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지급합니다. 단,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하여도 본 항을 적용합니다.

③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④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제 2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 8 조 우대금리

이 예금 가입 후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을 각각 추가로 제공합니다. 단,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우대항목	내 용
주택청약종합저축	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
군급여이체 또는 카드실적	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 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, 하나카드 결제실적이 3회이상 있을 경우 (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하며, 군급여이체 실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함)

제 9 조 세제혜택

이 예금은 비과세저축으로만 가능하며,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농어촌특별세법」의 개정에 따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, 추후 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1.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2.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제 10 조 1% 이자지원금 지급

- ①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대상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.
 1. 만기일 이후 해지 (단, '21.10.14 이후 만기도래하는 계좌에 한함)
 2. 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: ① 전역증 ② 병역증 ③ 병적증명서 ④ 복무사실 확인서 (복무중 대체복무요원만 가능) 中 택 1
- ② 지급금액은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%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. (단, 1% 이자지원금은 '23.12.31 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)
- ③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%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,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④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제 11조 매칭지원금 지급

- ①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신청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 (국군재정관리단) 및 병무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.
- ② 지급금액은 '22.01.01 일 시행일 이후 납입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③ 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지급조건은 제 10 조의 1% 이자지원금과 동일합니다.
- ④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,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지원금액 변경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병역법 시행령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 12 조 제한사항

- ①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며, 질권설정은 가능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
- ③ 이 예금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, 가입 및 납입이 불가하며 1%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부 칙

- 이 특약은 2020년 05월 14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
- 이 특약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
- 이 특약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
- 이 특약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
- 이 특약은 2023년 01월 3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.
- 이 특약은 2023년 03월 3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.
- 이 특약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
- 이 특약은 2024년 06월 03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.

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